

정책논단

제주지역 약용작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태 윤

1. 서론

제주는 한반도와 격리되어 있는 섬이라는 특성과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아열대성 식물에서부터 아고산대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자원¹⁾을 보유하고 있어 약용작물 산업 육성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또한 제주에는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한라산이 있으며 진시황제의 명령으로 불로초를 캐기 위해 선남선녀 500명이 다녀간 곳으로 기록되는 등 약초와 관련된 역사와 이야기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및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청정성을 인정받고 있어 청정1차산업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약용작물 산업은 생산·가공·유통·체험 관광을 포함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제주를 찾는 1,000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후방 연관산업의 효과도 매우 높아 약용작물 산업이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제주지역 약용작물 생산량은 약용작물 관련 통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3년도부터 2012년까지 최근 20년 동안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7.2%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제주지역 약용작물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6.7%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1) 제주에 자생하는 식물종은 총 1,800여종이며, 이중 801종이 약용식물이며, 보유자원 120종, 약용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식물종은 21종이다.

약용작물 산업은 의약품, 식품, 산업소재(화장품, 향료 등), 생활용품 개발에 사용되며, 세계 약초 시장은 2007년 2,124억 달러에서 2050년에 약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유망산업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약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에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약용작물 또는 한방 관련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이 23개 소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또는 한방 관련 지역특구 지정 현황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약용작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토대로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본 고에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화 방안 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13) 보고서에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개요 및 특징

1) 개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 7개 과제²⁾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 3월 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2004년 도입 당시 6개로 시작한 지역특구는 2012년 148개로 늘어났으며, 특화 분야도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유통물류 뿐만 아니라 산업연구, 의료분야까지 확장되었다. 2006년 6월부터 지역특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수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인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³⁾를 도입하였고, 9월에는 지역특구박람회

2)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는 ①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③ R&D 지방지원비율 확대, ④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⑥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 ⑦ 낙후지역 대책 수립 등임

3)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는 2007년도부터 매년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 중에 있다.

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7년도에는 기업유치 중심의 산업특구에 중점을 두었는데, 고성 조선산업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특구,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등이 지정되었다. 일부 특구운영이 극히 부진하거나 당초 목적 달성이 곤란한 특구에 대해 특구지정을 직권 해제⁴⁾하고 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특화사업의 산업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2009년 7월 2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을 허용하여,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외부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업무를 위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개발과 함께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2) 특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특화발전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의 수립과 집행, 사업성과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제도이다.

둘째,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추진 방안과 이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원조달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지역발전 제도 중 직접적인 재정이나 세제지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자체 재원, 민자, 또는 지역주민의 자부담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넷째,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다른 제도와는 달

4) 지역특구위원회 직권으로 지정해제된 사례는 2007년 9월 사업추진이 중단된 '원주 포도주산업특구'이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 2012 연례보고서, 2012. 12. 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제시된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을 참고하여 새롭게 요약·정리하였다.

리 추진 주체, 사업내용, 대상지역, 추진기간 등 각종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서도 특구 지정이 가능하고,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도 복수의 특구지정이 가능⁶⁾하다. 특화사업의 성격상 일정기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나 계속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One-Stop Service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에서 지역특구 제도는 특구기획단이 단일창구가 되어 일괄협의(One-Stop Service) 함으로써 90일 이내에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45일 내에서 연장 가능).

이와 같이 지역특구는 각종 정부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민자유치사업 등을 지역특화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하나로 통합·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51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정 경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2월 30일에 전국적으로 6개의 특구가 처음 지정되었다. 그 후 2005년에 35개, 2006년 31개, 2007년 25개, 2008년 22개, 2009년 14개, 2010년 11개, 2011년 8개, 2012년 2개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전체 151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특구운영이 극히 부진하거나 당초 목적 달성이 곤란한 특구에 대해 특구지정을 직권 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2005년 지정된 특구 1개를 2007년 9월에 해제하였으며, 또한 2008년 지정된 특구 1개를 2011년 12월에 해제하였고, 2006년 지정된 특구 1개를 2012년 5월에 지정을 해제하는 등 총 3개의 지역특구를 지정해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48개 지역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은 <표 - 1>과 같다.

6)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하며, 동일지역(면·리 등)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역특구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특구지정 현황 (*12. 12월 기준)

지정년도	의료·복지	관광·레포츠	교육	유통·물류	산업·연구	향토자원진흥	합계
2004	-	2	1	1	1	1	6
2005	2	7	5	5	3	13	35
2006	1	5	3	3	3	16	31
2007	-	5	4	-	5	11	25
2008	1	9	4	-	1	7	22
2009	-	5	1	-	1	7	14
2010	-	3	2	-	1	5	11
2011	-	1	2	-	1	4	8
2012	-	1	1	-	-	-	2
지정해제	1	1	-	-	-	1	3
계	3	37	23	9	16	63	151

※ 자료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 2012 연례보고서」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역별·유형별 지정 현황은 〈표 2〉와 같다.

2012년 12월 전남(29개), 경북(25), 충남(16개), 충북(14개), 전북(14개), 경남(12개) 등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12년 12월 기준, 현재 관광·레포츠 유형으로 ‘제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 특구’와 향토자원 진흥 유형의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채험 특구’ 등이 지정되어 있다.

〈표 2〉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12.12월 기준)

유형 지역	의료·복지	관광·레포츠	교육	유통·물류	산업·연구	향토자원진흥	합계
서울(5)	-	1	3	1	-	-	5
부산(4)	-	3	-	-	-	1	4
대구(2)	-	-	-	1	2	-	3
인천(3)	-	1	1	-	-	1	3
광주(2)	-	-	1	-	-	1	2
울산(2)	-	1	-	-	-	1	2
경기(9)	-	4	1	-	2	4	11
강원(9)	-	4	-	-	3	2	9
충북(12)	-	3	-	1	2	8	14
충남(12)	-	1	4	1	1	9	16
전북(10)	3	4	-	1	2	4	14

지역	유형	의료·복지	관광·레포츠	교육	유통·물류	산업·연구	향토자원진흥	합계
전 남(17)	-	-	7	7	-	1	14	29
경 북(20)	-	-	4	3	4	1	13	25
경 남(10)	-	-	3	3	-	2	4	12
제 주(2)	-	-	1	-	-	-	1	2
합 계(119)		3	37	23	9	16	63	151

※ ()안은 특구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 자료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 2012 연례보고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구별 재원조달 계획은 <표 3>과 같다. 지역 특구당 평균 655억 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강원지역이 특구당 1,168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제주지역은 특구당 81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표 3> 지역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억 원)

지역(특구수)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계	(특구당 평균)
서울 (5)	92	270	1,086	169	1,617	(323)
부산 (4)	985	301	82	355	1,723	(431)
대구 (3)	140	247	42	45	474	(158)
인천 (3)	86	179	300	-	565	(188)
광주 (2)	241	97	127	149	614	(237)
울산 (2)	71	56	120	13	260	(130)
경기 (11)	1,786	4,466	3,777	733	10,762	(978)
강원 (9)	2,232	159	2,212	5,911	10,514	(1,168)
충북 (14)	1,247	640	1,824	4,991	8,702	(725)
충남 (16)	2,014	874	2,031	11,650	16,569	(1,036)
전북 (14)	4,159	886	2,951	4,360	12,356	(883)
전남 (29)	3,425	713	4,299	7,745	16,182	(558)
경북 (25)	2,167	527	2,510	758	5,962	(238)
경남 (12)	858	143	1,045	10,408	12,454	(1,038)
제주 (2)	52	103	-	7	162	(81)
합 계(151)	19,555	9,661	22,406	47,294	98,916	(655)

※ 자료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 2012 연례보고서」

7)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 수는 전체 지역특구 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구로 우리나라 전체 148개 지역특구 중 23개 지역특구가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임

4. 약용작물 관련 지역특구 지정 현황

전국 148개 지역특구 중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⁷⁾는 23개소로 <표 4>와 같다

<표 4> 지역별 지역특구 수 및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체	5	4	3	3	2	10	10	15	16	14	28	24	12	2	148
약용작물관련	1	0	1	1	0	0	1	1	3	6	4	3	2	0	23

※ 자료 : 지역특화발전특구 2012 연례보고서(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약용작물 관련 지역발전지역특구는 <표 5>와 같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국에서 약초 및 한방산업 부문 지역특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라북도(6개소)이며,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 4개소,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3개소, 경상남도 2개소 순이며,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가 각각 1개소이다.

23개 지역특구 중 지리산에 자생하는 약초나 지리산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특구는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남원 지리산 웰빙산업특구 등 3곳이 있다.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는 지리산·덕유산 등 1,000m 이상의 고산지역이 11개소에 이르는 등 다양한 심곡, 뚜렷한 사계절, 심한 일교차로 약초 및 특용작물 재배의 최적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그 동안 약초 재배 및 판매의 1차산업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약초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판매 등 2, 3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예부터 다양한 약초들을 재배하여 왔고,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선생과 그의 스승 류의태 선생이 활동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지역이다. 산청군은 총 농업인구의 12.5%인 2,172명이 약초 재배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약초산업 활성화와 이를 관광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1,000여종의 양질의 산약초를 활용한 약초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는 허브재배 적지로서의 지역적 여건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매년 세계허브산업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허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허브의 생산, 가공, 유통판매 촉진 등을 위한 허브산업 벨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제주의 경우 자연환경자산 및 다양한 식물자원을 자랑하는 제주에 약초 및 한방 관련 특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약초와 기타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5〉 지역별 약용작물 관련 특구명

지역명	특구수	특 구 명	비고
서울	1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대구	1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인천	1	강화 약썩특구	
강원	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충북	1	제천 약초웰빙특구	
충남	3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전북	6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진안 홍삼한방특구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전남	4	장흥 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광양 매실산업특구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화순 백신산업특구	
경북	3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경남	2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5. 약용작물 관련 지역특구 지정 목적

약용작물 특구의 지정 목적은 크게 한방산업(한약재 유통) 중심지, 관광산업과의 연계 전략, 지역특화산업 육성, 첨단의료기기산업 중심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농가소득 증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정목적별 해당되는 특구는 다음과 같다.

한방산업(한약재 유통)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특구는 서울 약령시한방산업 특구, 대구 중구 약령시한방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 특구, 장흥 정남진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등 6개 특구이다.

관광산업과 연계 전략으로 추진하는 지역특구는 강화 약쑥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진안 홍삼한방특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등 5개 특구이다.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구는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남원 지리산웰빙산업특구,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화순백신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안동 산약(마)산업특구 등 7개 특구이다.

약용작물과 직접적인 연계가 적지만 첨단의료기기산업 중심지를 지향하는 특구⁸⁾는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1개소이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는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완도 해조류건강 바이오특구,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등 3개 특구이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구는 광양 매실산업특구 1개소이다.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 지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특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충분히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유통량이나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의 집적도, 주산지, 관련된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활용하려는 전략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8)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는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약재 또는 약초 산업과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에 포함하였으며, 완도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화순 백신산업특구도 간접적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 제시하는 지역특구에 포함하였음

6. 약용작물 관련 지역특구 주요 사업

약용작물 관련 23개 지역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은 크게 생산, 가공, 인프라 구축, R&D, 기업유치, 유통사업, 브랜드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 활용, 문화자원 활용, 축제,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⁹⁾

첫째, 생산과 관련된 사업은 7개 지역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단지, 생산벨리, 농업지구, 묘포장 조성 및 기타 생산 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수한약재 재배단지 조성, 선운산 복분자 생산 벨리 조성(대규모 단지 5개소), 허브농업지구 조성(재배단지), 생약초 집단재배단지, 오미자생산재배단지, 산약(마)생산기반 조성(생산장비, 저온창고 등), 약초시험재배단지 및 약용수 묘포장 등이 해당된다.

둘째, 가공과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가공공장 건립·운영, 가공단지 조성, 가공산업 및 가공시설 지원 등 9개 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의학 가공공장, 약썩 등 농특산물 가공공장 건립·운영, 허브제품 가공생산단지, 홍삼약초가공단지(농공단지, 유통지원시설 등), 생약초 제조 가공단지, 오미자가공산업, 산약(마)가공산업 육성(세척절단, 사료가공시설), 한방제조가공시설, 건강식품가공공장 건립(지구자 활용), 기능성발효식품 생산공장 등이 해당된다.

셋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병원,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기수련원, 환경성질환에방관리센터, 아토피빌리지 등 약초와 한방을 이용한 치료시설이나 진안 홍삼한방특구에서처럼 한방약초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홍삼가공품질관리센터 등을 집적한 홍삼한방타운을 건립하고 있는 특구는 5개 지역특구가 해당된다.

넷째, 약초 및 한방과 관련된 R&D 사업은 연구개발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연구시설 건립, 교육시설 건립, 연구소 건립, 아카데미 운영, 연구단지 조성,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등으로 23개 특구 중 12개 지역특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에는 생산업체 집적화를 위한 공단조성, 농공단지의 특화, 기술산업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구는 3개 특구가 해당된다.

9)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유형의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으로 분류하였으며, 관광자원 활용과 축제 등 일부 항목을 통합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사업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분화하였으며, 1개 특구에서 동일 유형내 사업내용의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특구의 수에도 이를 포함하여 제시함

여섯째, 유통과 관련된 사업에는 검사, 품질인증제, 도매업 특화, 전자상거래 구축, 약초 경매장 건립, 국제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확충, 판매센터 생약전문시장 조성 등으로 12개 지역특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브랜드 개발 및 홍보와 관련된 사업에는 고유브랜드 개발, 종합전시관, 테마공원 조성, 자생식물 환경공원, 아토피친화학교 운영 등으로 10개 지역특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곱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는 테마거리, 체험관, 테마파크, 주말농장, 경관도로, 명소화, 헬스팜, 의료휴양관광지, 식당단지 등의 개별사업을 추진하거나 복수의 사업을 복합화하여 추진하는 콤플렉스, 벨리 조성 등으로 고유브랜드 개발, 종합전시관, 테마공원 조성, 자생식물 환경공원, 아토피친화학교 운영, 전통한방거리 조성 등으로 15개 지역특구로 지역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많은 지역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여덟째,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는 전시문화관, 문화전승관, 전통시장 특화거리, 박물관 등으로 4개 지역특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홉째, 지역특구의 테마를 활용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특구는 8개 특구이다. 여기에는 한방축제, 약쑥문화축제, 약초건강축제, 인삼축제, 복분자 축제, 복분자 와인축제, 매실문화축제, 체험형 한방축제 등이 있다.

끝으로, 광양매실산업특구에서는 매실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제주지역 약용작물 관련 지역특구의 필요성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주지역 약용작물 생산량은 2000년 전국비중 16.7%에서 2012년 2.6%로 크게 감소함으로써 자발적 성장기회를 놓쳐버렸다. 약용작물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용작물 육성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지역 약용작물 관련 지역특구를 지정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용작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 한·중 FTA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배작목의 다양화 및 재배작물의 생산성 제고 등 경쟁력 향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제주지역은 불로초 전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등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의 이미지, 다양한 식물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국제관광지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약용작물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넷째, 약용작물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 가공 유통 및 6차 산업화 등 지역역량 결집과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1993~2012), 특용작물생산실적(각 연도)
- 제주특별자치도(1993~2011), 제주도통계연보(각 연도)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약초를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약용작물 병해충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13), 한방산업을 이용한 제주농업 경쟁력 확보방안

*** 인터넷 자료**

- <http://sezone.smba.go.kr/szhtml/cf0005.htm>(대구 약령시한방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cf0002.htm>(고창 복분자산업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5-19.htm>(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5-6.htm>(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5-7.htm>(제천 약초웰빙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5-5.htm>(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5-3.htm>(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5-12.htm>(원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5-21.htm>(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10-11.htm>(진안 홍삼한방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7-9.htm>(안동 산약(마)마을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5-25.htm>(영천 한방진흥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11-6.htm>(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5-24.htm>(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6-12.htm>(강화 약쑥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6-21.htm>(청양 고추·구기자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6-23.htm>(장흥 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6-16.htm>(문경 오미자산업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8-21.htm>(서산 바이오·웰빙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8-20.htm>(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08-3.htm>(광양 매실산업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10-15.htm>(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투특구)
- <http://sezone.smba.go.kr/szhtml/2010-16.htm>(화순 백신산업특구)